

칼럼

장기채 주필



제한절은 과연 잊혀지는 국경일인가

어제 17일은 71주년을 맞는 제한절이다. 그런데도 달력의 7월17일은 빨간 글씨가 아니다. 분명 국경일인데도 쉬지 않는다.

자랑스러운 우리나라 바로 대한민국의 헌법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선언한 날인데도 말이다. 헌법은 국가의 근본이 되는 가장 기본적인 법이다.

제한절은 헌법 공포를 기념하고 국민의 준법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지정된 날이 바로 제한절이다. 헌법이 특별히 7월17일에 공포된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과거 역사의 연속성을 염두에 두어 7월17일 조선왕조 건국일에 맞추어 헌법을 공포했다는 사실이다.

1949년 '국경일에 대한 법률'이 공포·시행되면서 제한절은 삼일절·광복절·개천절과 함께 4대 국경일 중 하나로 지정되었다.

이후 2006년 한글날이 국경일로 지정되면서, 제한절은 5대 국경일 중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국민들에게 대한민국 헌

법이 제정·공포된 것을 축하하고 이를 수호하며 준법정신을 높일 목적으로 제정된 국경일이 아니던가. 그런데 이 국경일이 공휴일이 아니다.

'비구름 바람 거느리고 인간을 도우셨다는 우리 옛적 삼백 예수님은 일이 하늘 뜻 그대로였다. 삼천만 한결같이 지킬 언약 이루니 옛길에 새 걸음으로 발맞추리라 이날은 대한민국 억만년의 터' 정인보 선생이 제한절을 기념해 만든 노랫말이다.

'옛길에 새 걸음으로 발맞추리라'는 이 구절은 헌법 제정을 문학적으로 절묘하게 표현해 감탄을 자아낸다.

어쨌든 건국 71주년을 표방하는 나라의 달력에서 제한절이 달력의 숫자 색깔만큼이나 퇴색된 느낌을 지을 수 없다.

이제 제한절은 사실상 국민들이 체감하기에는 한 단계 낮아진 국경일이 된 것 또한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또한 주 5일제로 인한 공휴일과 휴일증가로 쉬는 날이 많아진 것 또한 사실이다.

그래서 제한절이 쉬는 날에서 안 쉬는 날로 바뀌었다면 이 또한 더욱 실망스럽다.

결국 대한민국 건국 71주년을 맞으면서 대한민국 탄생의 기초가 되는 헌법제정일, 다시 말하면 제한절은 찬밥 신세가 되고 있다.

어쨌든 국경일인 것과 법정공휴일인 것 차이는 엄연히 국민이 느끼는 정서적 온도 차가 크다. 한마디로 체감이 크게 다를 것이다. 왜 국경일을 만들고 또 다시 법정공휴일을 지정하는가.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잊혀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자연스럽게 생활 속에서 그날을 각인시키는 효과가 단지 국경일일 때와 그것이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을 때와는 엄청난 차이가 있기 마련이다.

아마도 이렇게 몇 해가 흘러가면 제한절은 국민들의 뇌리에서 퇴색해 버리고 말 것 아니겠는가. 나라의 초석인 헌법이 탄생한 날이 법정공휴일이 아닌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최소한 일 년에 하루라도 오늘이 헌법의 탄생일이고, 이날이 있었기에 우리나라도 있다는 생각을 갖

게 하려면 제한절은 법정공휴일로 환원되어야 마땅하다.

나라 안팎은 아직도 어수선하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나라의 기본은 두말할 필요 없이 헌법에서 나온다.

제한절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된다. 1948년 7월17일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한 제한절의원은 이제 단 한사람도 생존해 있지 않다.

하지만 우리의 헌법은 살아있다. 지금부터라도 헌법을 탄생시킨 제한절을 우리의 근간을 다시 생각하는 날로 제자리를 잡아야 한다. 대한민국은 OECD국가 중 근무시간 1위인 나라라고 한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OECD국가 중 휴가기간 제일 짧은 나라 2위다. 이게 흑사라도 제한절을 공휴일에서 뺀 이유라면 참으로 년센스다.

제한절을 국경일이자 법정공휴일로 명실상부하게 되찾는 것은 우리의 근간을 다시 생각하는 그 첫걸음이자 첫 단추가 될 것이다.

그것은 수천 년간 이어져온 왕조시대를 마감하고 국민주권주의에 입각한 민주공화국을 여는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내년에도 7월17일은 72주년을 맞는 제한절(制憲節)이다. 우리나라 헌법이 제정된 날을 기념하는 국경일이다.

비록 71주년을 맞는 제한절은 공휴일은 아니었지만 내년 달력의 7월17일은 빨간 글씨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전국 방방곡곡에 태극기가 펄럭거리는 공휴일이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社說

직장 내 괴롭힘 근절해야

판공 회향 사건 양진호 회장의 직원 폭행, 간호사 '태움' 문화 등을 계기로 지난해 말 국회에서 통과된 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법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는 세 가지 요건을 갖춘 때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가령 직장 상사가 회식에서 원치 않는 술을 강요하며 폭언을 하거나, 밤늦은 시간이나 새벽 등 업무무시시간이 아닌 때에 지속적으로 문자나 에스엔에스(SNS) 등을 통해 불쾌한 메시지 폭탄'을 보내거나, 금요일 퇴근 직전에 업무를 맡기며 월요일 오전까지 처리하라고 하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된다.

상사가 아니라 후배가 한 행동이어도 관계에서 후배가 우위에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된다. 또 괴롭힘으로 인한 업무상 스트레스도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거나, 이런 일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 사용자에게 신고하면 된다. 사용자 측은 즉시 이를 조사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조사 결과 괴롭힘 사실이 확인되면 행위자 징계, 근무장소 변경 등 후속 조치를 해야 한다. 취업규칙에도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발생 시 조치 사항을 반드시 넣어야 한다.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했다는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을 주는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회복한 직장내 분위기는 업무효율을 제고시킬 뿐만 아니라 조말기며 월요일 오전까지 처리하라고 하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된다.

상사가 아니라 후배가 한 행동이어도 관계에서 후배가 우위에

생활정보전화

- ▲ 이주여성 긴급전화 1577-1366
- ▲ 응급질병상담 1399
- ▲ 미아·가출인신고 182
- ▲ 여성 긴급전화 1366
- ▲ 청소년 상담지원센터 1388
- ▲ 아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 ▲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 ▲ 응급의료센터 1399

긴급전화

- ▲ 기상예보 131
- ▲ 법률구조상담 132
- ▲ 인광 알코올 상담센터 222-5666
- ▲ 광주 남성의전화 673-9001
- ▲ 광주 여성의전화 363-7739
- ▲ 수도고장신고 121
- ▲ 전기고장신고 123
- ▲ 가스사고신고 383-0019

등록번호: 광주 가 0021 (2인)

호남신문

대표전화 (062) 229-6000
광고국 (062) 224-5300
팩스 (062) 222-5547

대표이사·회장·발행인 김평호
편집인·편집국장 강서원

본사: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서울 취재본부: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1동 167-16
Tel (02) 2238-0003

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

1946년 3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쇄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투고 E-mail : ihonam@naver.com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휴가철 물놀이 사고 예방

더위가 시작되면서 본격적인 휴가철이다. 날씨가 더워지면 야외활동과 물놀이 활동이 늘어나 익사사고 등 안전사고도 또한 늘어나는 시기이기도 하다.

특히 여름 휴가철에 어린이, 청소년의 물놀이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어린이나 청소년의 경우 3건 중 2건이 여름철에 발생하고 여자보다 남자가 2~4배 정도 높게 나타난다고 하니 여름 휴가철에는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와 안전수칙의 숙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행정안전부 재난연감에 의하면

물놀이, 자살, 추락 등 물에서 발생하는 사고가 최근 5년(2013~2017)간 발생한 수난사고 누적 월평균 2,240건인데 반해 7월에 발생한 수난사고는 4,441건이다. 2017년의 수난사고 유형을 보면 물놀이사고 1,778건(44%), 선박·동력·수상레저 366건(9.1%), 기타 자살사고 296건(7.3%), 추락사고 159건(3.9%) 순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주말 오후 12~17시 사이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특징을 보였다. 활동별로는 여가활동을 할 때 46.5%로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했고, 장소별로는 공공수영장, 목욕시설, 집 등에 비해 야외

(58%)에서 발생하는 빈도가 높다고 한다.

여름철에는 더위로 인해 야외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바닷가나 계곡, 산간을 많이 찾는다. 그러나 계곡 등에서 물놀이를 할 경우에는 기상상황을 잘 파악하여야 한다. 국지성 소나기로 인해 삼시간에 계곡물이 불어나 휩쓸리거나 고립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국립해양조사원에 의하면 7월에는 6월보다 해수면이 상승하고 대조기에는 해수면 상승이 더욱더 높을 것으로 예상되어 물놀이, 갯벌체험 등의 활동 중 만조시간을 수시로 확인하고 해수욕 등 연안활동에 유의해야 한다고 한다.

안전한 여름철을 보내기 위한 물놀이 안전수칙으로는 행정안전부 안전 TV(www.safetv.go.kr)에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동영상 확인하고 물놀이 전 준비운동, 구명장비 착용과 장시간 수영 또는 혼자 수영은 위험하므로 자제하여야 한다. 물이나 야외에 나갈 경우 어린이들은 방치하지 말고 부모와 함께하며, 물에 빠진 익사자를 구조할 때에는 구조하는 사람의 안전을 확보하고 빠른 구조요청과 즉시 물속에 들어가지 않고 주위에 소리쳐 알리고 신속히 119에 신고토록 한다. 바닷가나 강에서는 물살이나 파도를 확인하고 물의 깊이를 먼저 숙지하여 무리한 행동을 삼가하고 물놀이 전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단 한건의 안전사고도 없도록 하자.

임흥태 / 영암소방서 119구조대장

전한 TV(www.safetv.go.kr)에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동영상을 확인하고 물놀이 전 준비운동, 구명장비 착용과 장시간 수영 또는 혼자 수영은 위험하므로 자제하여야 한다. 물이나 야외에 나갈 경우 어린이들은 방치하지 말고 부모와 함께하며, 물에 빠진 익사자를 구조할 때에는 구조하는 사람의 안전을 확보하고 빠른 구조요청과 즉시 물속에 들어가지 않고 주위에 소리쳐 알리고 신속히 119에 신고토록 한다. 바닷가나 강에서는 물살이나 파도를 확인하고 물의 깊이를 먼저 숙지하여 무리한 행동을 삼가하고 물놀이 전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단 한건의 안전사고도 없도록 하자.

임흥태 / 영암소방서 119구조대장

문화융성 문화가 있는 삶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

서로의 입장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기 보다 상대방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하면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지 않을까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상대방을 미소짓게 합니다. 세상을 더욱 따뜻하게 합니다.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